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3. 6.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2월 16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2월 17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5. 3.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엄혜숙)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서울시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금연지도원의 정의(안 제2조제3호)
- 금연지도원의 자격, 임기, 위·해촉 사항 규정(안 제9조)
-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 수립(안 제10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 (2014.7.28.시행)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금연지도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 당 4만원으로 하고,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6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 금연지도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년 임기와 2년 단위 연장 가능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적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 또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1일 4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일당 4만원,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6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활동수당 금액 책정은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 중에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4만원으로 하였고, 야간·휴일 활동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6만원으로 정하였는 바, 다른 감시원 활동수당과의 형평성에도 맞고 법령 위반사항도 없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실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5 호
----------	--------

제출연월일 : 2015.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위촉 및 위촉 해제,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위촉절차 등 세부 운영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 정의 :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및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는 사람

나. 금연지도원의 위촉자 및 임기 등 규정(안 제9조)

- 위촉자 : 구청장
- 임 기 : 2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2년 단위로 연장
- 위촉해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때는 위촉 해제

다. 활동계획 수립 및 직무수행 범위 명시(안 제10조)

- 활동계획 : 연간 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실적 관리
- 직무수행범위 :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단독으로 시설점검 가능

라. 금연지도원의 주간 및 야간 활동수당 기준 설정(안 제11조)

- 수당 : (주간) 40,000원 (야간) 60,000원
- 지급방법 :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심사실시(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반영)

- 제9조(금연지도원의 운영)구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연지도원의 업무특성상 직무 및 범위, 권한남용 금지, 해촉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조항을 준용할 것을 권고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12.18~2015. 1. 6,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경우”를 “때”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법 제9조의5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될 경우 지체없이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업무계획)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

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시설점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u></p> <p>③ ④ (생략)</p> <p><u><신설></u></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 ----- 때----- -----</u></p> <p>③ 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금연지도원의 운영) ① <u>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u></p> <p>② <u>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u></p>

〈신 설〉

〈신 설〉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법 제9조의5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될 경우 지체없이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업무계획)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시설점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